

【별표 1】 채용 결격사유

『공무직직원관리내규 제5조(결격사유)』

제5조(고용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.

1. 인사규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2.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
3. 부조리 등 징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

『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』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
【별표 2】 순회정비업무 분야 대상 자격증

구 분	기술사 등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
전 기	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	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	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	전기기능사
통 신	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	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	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	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

※ 상기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(자격증 명칭 변경 등 상기 자격증의 연혁 자격증은 인정)

【별표 3】 사회적 약자 가산점 (매 전형 가산점)

구 분	장애인	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	다문화가족	한부모가족
배 점	5점	5점	5점	5점	5점
확인서류 (면접시 징구)	장애인 증명서	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차상위 계층 확인서	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	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사회적 약자 가산점 중 2개 이상 해당 시 하나만 반영하며, 취업지원대상자(법정사형) 가산점은 별도 부여